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2019. 2. 21.(목) 14:00~16:00
서울지방법원사회관 1층 회의실

발제자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형곤 뉴미디어비평가(전 EBS 이사)

좌 장

김태훈 회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자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연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



주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주최: 한변,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Program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 ◆ 일 시 : 2019. 2. 21.(목) 14:00~16:00
- ◆ 장 소 : 서울지방법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 주 관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 주 최 : 한변,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 세부일정

행사	참석자 및 내용	
사회	정선미 변호사(한변 사무차장) 행사안내, 국민의례, 좌장 소개	
인사말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좌장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발제	발제1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발제2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토론	토론1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론2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토론3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토론4	허만호 교수(경북대)

질의 응답 및 기타



Contents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인사말

김태훈(한변 상임대표)	1
--------------	--------

발제

발제1.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3
발제2.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27

좌장및토론

좌장. 김태훈(한변 상임대표)	
토론1.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47
토론2.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63
토론3. 이현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69
토론4. 허만호 교수(경북대)	81



인사말



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지난달 30일 내려진 김경수 판결은 2017년 대선의 민의가 대규모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당시 네이버 등 여론 형성력이 막대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8만 건에 달린 댓글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무려 8,840만 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한 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으로서 복심으로 알려져 있던 현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여한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므로 탄핵 등 법관의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아가 18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경남 창원에 내려가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고,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道政)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일부 법률가 단체(민변)도 담당 재판장을 법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집권 여당과 일부 단체의 도를 넘는 대응은 담당 재판장과 그 상급심 법관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여 사법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이므로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정면 도전하는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에 이번 판결에는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그 유죄증거가 차고 넘치므로 그 인정사실 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김경수 지사를 보다 엄중히 처단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은 19일 다시 재판 불복 토크쇼를 벌이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분석과 토론은 불가피하다. 이에 한번은 법조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행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번 외에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등 유수의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좌장으로서는 김태훈 변호사(한번 회장), 발제자로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연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현 변호사(한번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가 참석한다.

모쪼록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김경수 판결의 내용과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법부에 대한 반민주적·반헌법적 공격이 불식되어 성숙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9. 2.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발제 1

김경수 판결문 분석

이상철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판결문 분석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 첫머리에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32형사부에서 선고된 소위 김경수 여론조작사건 판결문(2018 고합823)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 사건은 단순히 일반적인 여론몰이를 위한 댓글조작이 아니라 중요한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직 도지사에게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문제 삼아 소속 정당과 동조 진영에서 건전한 판결 비평을 넘어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과 법관 탄핵 주장 등 오도된 여론 형성을 하는 등 사법권 독립 침해의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중대한 일대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판결(특히 형사판결)에 대한 비평 내지 비판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당해 재판부가 재판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이나 관련 증인들의 진술 및 심지어 그들의 태도 등까지도 종합한 뒤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여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와 당사자들의 생생한 언동을 직접 접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비록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봐서는 그 심증 형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정당한 결론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비판 내지 비평을 하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판결문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어떠한 증거 취사 과정을 통하여 사실인정에 도달하였고 그 인정된 사실에 기하여 어떻게 심증을 형성하여 일정한 결론(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주문 부분)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 부분에서 나름 논리를 담고 있으므로 일응 그러한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판결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실인정된 바탕하에 논리적 경험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판단이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비평 내지 비판은 허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에는 범죄구성요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와 주요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인(추정)시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가 있으나 두 증거 사이에는 증명력의 차이는 없어 실질적인 구별



의 의미가 별로 없으며 결국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국 법관이 그의 자유로운 심증으로 직접증거이든 간접증거이든 증명력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유죄의 범죄사실 인정에는 법관의 자의가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는 과정이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의 요지 설명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유죄 판단이 법관의 합리적인 심증에 의하여 정당하게 도출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범죄사실과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경수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그 대강의 요지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김경수는 2016. 11. 9.경 닥네임 드루킹 김동원이 핵심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든 파주시 소재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민주당 당내경선과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댓글순위조작프로그램(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연을 듣고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법무팀장인 △ 변호사는 킹크랩을 운용하여 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대가로 주요 요직에 △을 임명할 수 있도록 김경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한 뒤 피고인, 김동원 및 △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하단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1차로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6. 12. 4.부터 2018. 2. 8.까지 네이버 포털사이트 2,325개의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통계시스템에 반영토록 하였고 2017. 2. 5.부터 2018. 2. 1.까지 다음 484개의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토록 하였고, 2017. 3. 3.부터 2017. 4. 29.까지 204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

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는, 김경수는 2017. 6. 7.경 김동원에게 대선 이후에도 김동원 등이 정부 및 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김동원으로부터 △을 오사카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청와대 담당자에게 추천하면서 이력서를 전달하였으나 2017. 11. 말경 오사카총영사 임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오사카는 어렵고 센다이에 검토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8. 1. 2.경 드루킹에게 오사카 대신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의 센다이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키크랩이라는 댓글순위조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1차로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포털운영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김동원 등의 위와 같은 활동의 대가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경공모 회원의 오사카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 등의 경공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선포활동 등의 댓글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키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공모가담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범행을 하는 것을 승인한 적도 없고 또한 제7회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 작업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공모나 가담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며¹⁾ 각 무죄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순위조작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연을 듣고 키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한 뒤 이를 김동원에게 지시하여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조작이 이루어진 사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도 민주당을 위하여 댓글조작 작업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1) 피고인의 법리적 다툼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굳이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뇌물죄 등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김동원과 사이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을 증명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판결은 결국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여러 갈래로 인정한 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은 꼭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입증된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推認)한다는 뜻으로 ‘-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재판부가 직접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추측에 의하여 인정하였다는 일부의 비난은 이 점에서 부당하다.

3. 판결문상 연도별로 정리된 피고인과 김동원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황사실

- 1) 2016. 6. 30.경 김동원은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함.
- 2) 2016. 9. 12. 김동원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패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²⁾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 특히 2016년 10월경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함.
- 3) 2016. 9. 28. 피고인은 처음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원들 일부 참석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음.
- 4) 2016. 10.경 김동원은 회원 △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함. 2016. 10. 16.경부터 △은 △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
- 5)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김동원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2) 당초 경공모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로 시작되었다가 2017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됨.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경공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함.

6) 2016. 11.부터 △은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 △도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

7) 2016. 11. 26.경부터 △과 △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

8) 2016. 11. 25. △은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 △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

9) 2017. 1.부터 경공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

10) 2017. 1. 6. 김동원은 피고인을 국회 근처에서 만나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전달.

11) 2017. 1. 10. 14:00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짐.

12) 2017. 2. 7. 김동원은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을 전달,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 △을 소개받음.

13) 2017. 2. 17. △이 경공모 사무실 방문 김동원 등과 식사.

14) 2017. 3. 2. 김동원은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문서를 전달, 피고인과 헤어진 후 △를 만나 △의 이력서를 전달.

15)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16) 2017. 3. 14. 피고인과 김동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과 △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

17) 2017. 3. 27. ~ 2017. 4. 3. 경공모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각 경선장 참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

18)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

19) 2017. 6. 7. 피고인과 김동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

20) 2017. 11. 15. 피고인과 김동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을 오사가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

21) 2018. 2. 6. JTBC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

22) 2018. 2. 20. 피고인과 김동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이 오사가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동원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

위 연대별로 정리된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6. 6. 30. 처음 만난 때부터 2018. 2. 20. 관계가 단절될 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그 중 피고인의 파주 경공모 사무실 방문(국회에서 퇴근시간 파주 사무실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이상 걸림)은 3차례에 이르러 그들 관계가 단순한 지지자 수준을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김동원의 경공모가 댓글작업만 하는 단순한 지지자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 등에도 깊이 관여한 조직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김동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아래와 같은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바, 그 4개의 대화방은 김동원이 피고인의 명함용으로 저장한 전화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함), 김동원이 피고인의 비선용으로 저장한 전화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

화방(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함), 같은 비선용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함), 같은 비선용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함)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과 김동원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 둔 점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은 보안을 유지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4. 판결문상의 논리 구성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의 경위, 횟수, 목적, 전화통화를 이용한 대화방법 등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정황이 일응 객관적으로 드러났지만 과연 피고인이 킹크랩 등의 개발이나 운용을 지시 또는 승인하여 댓글조작 작업을 공모하여 수행한 공범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첫째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둘째 나아가 피고인이 킹크랩의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공동가공의 의사 여부) 셋째 피고인이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로 나누어 각 파트별로 너무나 상세한 정황사실을 보태어 열거한 뒤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논리적 구성과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고 하겠다.

1)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016. 9. 28. 브리핑 : 피고인이 2016. 9. 28.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방문 전날 김동원이 외부인사용으로 저장하여 만든 경공모 소개서 PPT자료 중 '경공모소개04'에는 '경공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

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동원이 피고인의 경공모 사무실 첫 방문 이후 2016. 10. 12. 최종 수정본으로 작성한 '2016. 10.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 종래의 지정학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김동원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동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부터 2018. 1. 19.경까지 약 49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였는데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공모 사무실 방문 무렵에 김동원이 경공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과 다른 당의 댓글 기계 사용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된다.

2016. 11. 9. 브리핑 : 피고인이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으로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제시된 네이버포털사이트에 접속 로그내역은 경공모에서 테스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과연 피고인 면전에서 시연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선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김동원의 진술과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동원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 △, △의 킹크랩 개발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시연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짜고 한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공모의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시점인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약 16분 사이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 △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동 시간대에 △이 라오스에서 거주하는 회원 3개의 아이디를 빌려 로그인하여, 댓글페이지로 이동, '공감'을 클릭하고, '공감순 정렬' 버튼 클릭,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한 순차적 '공감' 클릭하고,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뒤 로그아웃하는 6단계의 동작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9회 반복한 것은 그 자체로도 뉴스기사의 댓글에 공감의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1심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졌는바, △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로그 내역은 2016. 11. 4.부터 2016. 11. 9. 까지 사이에 접속한 것만이 나타나고 특히 동월 4.부터 7. 04:00 사이에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테스트하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하루 1, 2차례 짧은 동작만을 실행하다가 2016. 11. 9. 20:07:15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로그패턴이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왔다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2016. 11. 9. 이 사건 시연 당일 작성되어 피고인의 방문 한 두시간 직전인 16:55 인쇄되고 17:02 최종 수정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극비>'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극비 부분에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정보보고가 김동원의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로 보이는 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던 도중 참여하고 있던 전략회의 멤버들을 모두 내보내고 △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다는 참석 전략회의 멤버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8.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경공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아 댓글기계의 존재 및 대처필요성을 알고 있는 점, 김동원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된다고 하겠다.

49회에 걸친 온라인 정보 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 압수된 △의 USB(이하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

망록' 시트에서 발견된 일부 정보 보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상당한 온라인 정보보고,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 발견된 일부 정보보고 중 중첩된 부분은 대부분 내용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정학 보고서'에 처음으로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이 만들어진 점, 김동원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김동원이 캡처하여 놓은 시그널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된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존재하는 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된 점,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동원은 내부 전략회의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점, 김동원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김동원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김동원은 2017. 4. 4. kkm스텝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텝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한 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주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 △, △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 점,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김동원이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2017. 2. 27.자),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³⁾ 등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취지가 들어가

3) 이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있는 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김동원 및 전략회의팀 멤버들의 일치된 진술, 김동원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데⁴⁾,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김동원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는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다만 2017. 6. 12.자 정보보고 제외)와 △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고 피고인이 모두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⁵⁾ 이 점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고 하겠다.

김동원의 피고인에 대한 기사목록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 김동원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는 사실, 기사 목록의 내역상 경공모는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사실⁶⁾. △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에 전송하였는데, 김동원은 위와 같이 △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자신이 보지도 않을 내용을 수백건씩 지속적으로 전달받으면서도 아무런

대한 설명한 것임.

- 4) 당초 김동원은 2017. 3. 13.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1일로 재설정함에 따라 그 날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었음.
- 5)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키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원의 키크랩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 △ 등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 6) 이와 관련하여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진영의 댓글기계 등에 관한 내역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음에도 매일 수작업에 의하여만 달성하기 어려운 기사목록에 있는 많은 댓글 작업 내역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제기나 불법적 방법 동원에 대한 염려나 금지의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삭제 : 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에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된 사실, △은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동원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동원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김동원은 2018. 2. 9. △으로부터 갑자기 피고인과의 면담 연기통보를 받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처하였고 그 날 피고인이 김동원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김동원이 항의하자 △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사실, 김동원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은 같은 날 16:33경 김동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김동원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보좌관님, 김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이후 △은 2018. 2. 12. 14:07경 김동원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과 김동원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는 곧바로 그것이 김동원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고 김동원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김동원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김동원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김

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2) 피고인이 킹크랩의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공동가공의 의사 여부)

김동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 5. 21.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1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은 ‘김동원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⁷⁾, 킹크랩 운용을 담당하는 △은 ‘김동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니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동원이 피고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그 전날 킹크랩 시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전략회의팀 멤버 △는 ‘김동원이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킹크랩 개발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과 함께 유심칩, 휴대전화기를 수집한 △은 ‘△등 경공모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1명으로부터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은 ‘김동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김동원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시연을 보여준 직후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 일관되며, 당시 직접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6. 11. 9.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약 2달 뒤인 2017. 1. 10. 경공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김동원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다만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관하여 단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있는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변경을 하는 등 하였으나 △은 일관되게 김동원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10. 김경수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이라는 내용을 올린 사실,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는 대화에 관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 1. 10.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참석한 △, △도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경공모 회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동원, △, △,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부합. 김동원은 "우리측 거사란 특별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플운동'이나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가 김동원이 말하는 '거사'는 경공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원론적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김동원이 기재한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라는 표현을 김동원이나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은 김동원이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해 주겠다'는 말은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포함한 경공모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이상의 점에서 피고인은 김동원의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

함. 김동원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하였고,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으며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댓글의 ‘접기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댓글 작업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경인선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음. 김동원 또한 피고인이 전송된 기사목록을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있었음. 김동원이 댓글 작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 목록을 정리하여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매일 전송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댓글 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지속한 것이고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일일 보고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행위는 김동원이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단순히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본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여 수긍된다.

피고인의 네이버 기사 등 URL 전송 :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2018. 1. 20.경 △을 통하여 2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포함하면 13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함. 김동원은 피고인으로부터 URL을 전송받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해당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고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 김동원은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 URL 중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URL 등에 관하여는 텔레그램 KCS 방에 올려 경인선 회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이버 기사 URL을 보내자 김동원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동원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보낸 위 네이버 등 기사 URL은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이 2018. 1. 20.경 김동원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인 것에 대하여 △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을 통하여 김동원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동원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고 계속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보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⁸⁾.

피고인과 김동원의 긴밀한 협력관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를 통해 김동원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김동원과 만나고 직접 경공모 사무실을 3차례 방문함. 피고인은 2016. 9. 28.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시 댓글 작업을 하는 조직인 경인선에 대한 소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 2016. 11. 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봄. 피고인과 김동원의 총 11회의 만남 중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의 만남이 7회에 달하는 등 주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남. 피고인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로서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시각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는지 얼마 되지 않은 지지자나 단체를 1달에 1번 꼴로 만나거나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좌관 △은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일정은 자신이 조율하였는데, 자신이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이 김동원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연기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피고인과 김동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동원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은 또한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

8) 피고인은 기사 등 전송은 다른 지지자들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서의 홍보를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지 댓글 작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보낸 기사 URL 중에는 2017. 3. 8.자 “주부 62% 비호감, 문재인, 여성표심 ‘울인’... 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기사, 2017. 3. 13.자 “문재인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대응” 기사와 같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선기간으로 접어드는 2017. 3. 8.부터는 댓글 작업(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가능한 네이버 기사 URL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네이버 기사 등 URL을 보낸 것이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홍보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함.

모는 좀 특이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선으로 강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거나 저희에게 부담 가는 요구를 하는 그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김동원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의원을 경공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경공모 회원인 △를 통해서 △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⁹⁾. 경공모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동원이 경공모 숨은카페에 'BDE¹⁰⁾ 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줌. 김동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줌. △과 △은 2016년 12월경 김동원의 지시로 '네이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홍보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함,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함. 피고인은 2017. 1. 5.경 김동원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김동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째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한 뒤

9) 김동원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임.

10) 피고인의 별칭인 '바둑이'의 영어 이니셜을 따 'BDE'라고 한 것으로 보임.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¹¹⁾를 전달하고 이후 2017. 2. 7.경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 피고인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 발표직후인 동일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동원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동원은 이에 ‘와서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함, 김동원은 2017. 2.경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긍정적인 연락을 받은 뒤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과 △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이 2017. 4. 4. 문재인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음.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를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정책 반영과 일부 인사청탁도 들어줌으로써 범행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됨.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전개 : 김동원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이버와 대림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 김동원이 2017. 6. 3. △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이 김동원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동원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 김동원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

11)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경공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피고인은 2017. 6. 7.경 김동원의 △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경인선 활동과 키크랩 작업이 중단되자 김동원에게 △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에 '경공모의 스케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선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인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동원에게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김동원의 키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지배 :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 김동원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김의원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광장의 △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 김동원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 2017. 3. 2. 김동원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그날 저녁에 △비서관을 만나 △에게 △을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의 이력서를 전달. 김동원은 2017. 3. 14. △에 대한 중앙선대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의 힘으로는 △을 쫓아 낼 수는 없으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 김동원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월달에 △의 선대위 추천을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¹²⁾. 이에 김동원은 2017. 6. 11. 피고인이 네이버 뉴스기사

12)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김동원으로부터 △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김동원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URL을 보내자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경공모 내 댓글 작업을 주관하던 텔레그램 목멤버방에도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경수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2017. 6. 10.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 11.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위 악플이 뉴스 기사 댓글란의 상위에 올라가도록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함. 김동원은 2017. 6. 14. 저녁에 △을 만난 다음날인 2017. 6. 15. 18:50경에는 △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경수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경수 의원과 한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은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올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이 △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본 뒤 김동원에게 △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김동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을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함. 김동원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서 “김의원님, △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 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오사카 총영사의 직이 경공모 조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설명되고 있음. 김동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2. 전화로 △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샌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받음. 따라서 위와 같이 △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온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동원이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하여 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동원에게 △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동원으로서도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댓글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동원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된다.

5. 결론

이 사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 통신 자료 등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경공모 회원 등 여러 관련자의 진술 및 기타 자료 등에 나타난 실로 풍부한 정황사실 등으로 범죄사실 특히 2016. 11. 9.자 킹크랩 시연에의 피고인의 참가나 △에 대한 공직 임명 건을 유인으로 대선에 이어 이 사건 지방선거에 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나 경인선의 활동이 단순한 선플활동인 줄 알았고 킹크랩에 대한 존재와 운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선플활동으로만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 자료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11. 9.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동 시간대에 같은 사무실의 시연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킹크랩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다른 사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수십군데나 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 없이 혹은 범죄 증명에 대한 확신 없이 추측성 판결을 한 것으로 비판을 가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의 합리성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정황사실)의 입증을 통하여 주요 사실을 추인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어 추인한다는 표현을 풀어쓴 ‘본다거나 보



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증거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부당한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양형과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형식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래에 와서 중요시되는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범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된 관계 하에 무려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범하고 더구나 그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발제 2

허익범 특검과 성창호 판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건들지 않았다.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
(전 EBS 이사)





허익범 특검과 성창호 판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건들지 않았다.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 들어가는 말

허익범 특검과 성창호 판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건들지 않았다. 142만 건의 댓글조작, 1억 번의 클릭 조작이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다. 드루킹이 조작한 댓글의 개수 142만개 중 김경수와 공모한 것은 118만 건, 신문기사의 건수는 8만1천 건, 이 중에 대선 전에만 1만9천 건의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했다. 1억이라는 숫자, 142만 댓글 중에 118만개, 다시 8만 건의 신문기사와 대선 전에만 1만9천 건 등등 가늠하기 힘든 숫자들이 많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드루킹 사건은 완벽한 여론조작이다. 댓글은 댓글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기사의 내용보다 댓글을 더 신뢰한다는 국민도 30%나 되었다. 30대의 36.8%는 기사내용보다 댓글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나머지 60%가 댓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80%의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댓글은 명절 민심이라 할 수 있었고, 와글와글 시장 민심, 정치인과 정당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댓글이었다.

2018년 1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장에서도 댓글이 화두가 되었다. 조선일보의 박정엽 기자는 청와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악성댓글이 많아 기자들이 힘들어 한다고 했다.

김경수와 공모한 김동원(드루킹)은 142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 기본권이다. 이번 드루킹 여론조작 사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살해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신문기사가 언론사와 기자에 의한 일방통행식 정보 전달이라면, 댓글은 독자와 기자간, 독자와 독자간, 독자와 국민간에 주고받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이다.

정치인과 정당들은 댓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번 드루킹 여론조작은 민심을 조작한 것이고, 조작된 민심은 다시 국민여론으로 포장되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여론조작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준석 위원이 분석한 드루킹 댓글 조작 실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드루킹 사건의 범죄 일람표에 있는 110만 건의 댓글 중 10만 여건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통해 누가 드루킹 댓글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¹⁾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그 이유는 10만 건의 댓글 중 안철수라는 단어가 7,441개로 타 야권후보의 댓글을 합친 것보다 많았는데 눈에 띄는 대부분이 비난 일색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이라는 명사가 포함된 것이 9,791건인데 대부분 칭찬의 댓글이었다고 했다. 그 외 홍준표, 유승민 등의 명사가 포함된 것을 통계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는 드루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은 댓글을 작성하기 보다는 남이 쓴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을 주로 택했다. 댓글을 쓰면 ‘댓글이력’이 남아 네티즌 누구에게든지 발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여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발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댓글을 조작했는지, 순공감순 정렬이나 호감순 정렬은 무엇인지, 베스트 댓글은 무엇을 말하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드루킹이 여론조작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 2017년 대선, 베스트댓글이 조작되었다!

네이버 댓글의 순공감순 정렬 방법은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의 먹잇감이었다. 순공감순 정렬 이전에는 호감순이 있었고, 이 두 정렬 방법에 의해 베스트 댓글 일명 ‘베댓’이 만들어졌다. 베스트 댓글은 순공감순 정렬방법상 맨 위에 올라 신문기사를 읽은 네티즌 70%가 읽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슈퍼스타 K 방식의 인기투표에서 1등을 한 셈이다. ‘순공감순’이란 공감 수에서 비공감 수를 뺀 것으로 이 숫자가 큰 순서대로 댓글이 배치되는 댓글 정렬 방법이다.

그런데 한번 베스트 댓글에 오르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네티즌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댓글에 혹은 첫 화면에 노출된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네티즌

1) 녹색경제신문 2019.02.02. 박근우기자

들은 남의 의견에 ‘싫어요’를 뜻하는 비공감에 클릭하기 보다는 ‘좋아요’, 즉 공감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누군가의 조작이 있지 않는 한 영원히 베스트 댓글로 남게 된다.

한편 드루킹이 점찍어준 댓글 혹은 김경수가 URL주소를 보내 조작될 댓글의 좌표만 찍어주면 나머지는 컴퓨터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약 50~70회의 클릭 조작을 하는 데 불과 10초도 안 걸린다. 그렇게 베스트댓글이 되면 30~50만의 네티즌이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중 70%가 댓글까지 읽게 되니, 신문사를 차려 기사를 고용하고 기사를 쓰는 것보다 천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노력으로 언론의 역할을 해버렸던 것이다.

142만개의 댓글을 473일간 조작했다. 나눠보면 하루에 3,002개의 댓글을 조작한 것이다. 네이버는 랭킹뉴스 안에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포토, TV 등 7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당 30개의 댓글 많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드루킹이 주로 댓글을 조작하는 범주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뉴스에 집중된다. 하루에 90개의 뉴스와 뉴스마다 30개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보면 된다. 보통 ‘더보기’를 클릭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댓글의 수는 20개, 따라서 드루킹은 네이버의 정치, 경제, 사회 뉴스에 달린 첫 화면 20개 및 다음 화면까지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네티즌이 봤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 ‘접기요청’ 으로 댓글을 숨기기도

그런가하면 ‘접기요청’ 기능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댓글 정책이다. 댓글을 읽는 사람이 보기 싫을 때 ‘접기요청’을 통해 더 이상 내 화면에 댓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일정수의 네티즌이 ‘접기요청’을 한 댓글은 자동으로 접혀져서 그 후로는 모든 네티즌이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내용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펼쳐지지만 네티즌 대부분은 그러한 수고까지 하면서 접어놓은 댓글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거 말고도 볼 것이 많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공감 클릭으로 댓글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에 주력하면서 특정 댓글에 대해서는 접기 요청으로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조작했다. 그렇게 희생당한(숨겨진) 댓글, 그렇게 조작해서 우선순위가 조정된 댓글이 142만개나 된다.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클릭한 횟수가 1억 번이라고 한다.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하여 특정 성향의 글을 베스트댓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접기요청’을 조작하여 특정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여론조작 범죄이며 댓글을 쓴 개개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살해사건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 댓글 조작이 여론 조작, 조작된 여론은 민심을 흔들고, 결국 표심까지 흔들어

이제 댓글조작이 왜 여론조작이 되는지, 그리고 영국의 권리장전 이후 민주주의 최대의 집단학살이라 주장하는지 살펴보겠다.

우리 국민의 20%는 댓글을 한 번 이상 써보았다. 댓글을 써본 사람 중에 30%는 댓글을 두 개 이상 달아봤고 나머지인 70%는 딱 한 번만 댓글을 썼다. 그것은 빅데이터 통계로 입증 가능하다. 필자는 지난 1월 목포 투기 권력비리 손해원 게이트가 터졌을 때 관련 댓글 19만5532개를 모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댓글을 처음 달아본 비율은 68.2%였고, 31.8%는 두 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 네이버 아이디 뒤에 ‘댓글이력’을 볼 수 있는 ‘댓글모음’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목포 투기 권력비리 손해원 게이트의 댓글 20만개를 분석한 결과 댓글러 혹은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표시한 87%가 손해원을 투기꾼이라 생각했으며 최순실과 비교했고 영부인 김정숙의 친구로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댓글로 파악한 여론이다.

▶ ‘댓글이력’을 공개한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쓰면서까지 조작을 했을까?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로 두 번째 댓글을 다는 순간 그 아이디 뒤에는 ‘댓글모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고 했다. 네이버가 ‘댓글이력’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아이디로 댓글을 쓰는데 특정후보에 편향적인 댓글을 달게 되면 필자 같은 댓글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딱 걸린다. 드루킹은 그것을 잘 안다. 그래서 드루킹은 댓글을 직접 달지 않고 다만 누군가 국민이 직접 단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또는 ‘접기요청’을 통해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댓글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수법을 썼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형태소 분석만으로 안철수가 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가 댓글에서 자주 언급되는 까닭은 안철수에 대한 방송의 보도, 즉 인지도 때문이다. 드루킹은 네티즌이 쓴 댓글을 보고 그 댓글에 대한 공감수를 높이거나 비공감수를 높여 순공감순 정렬 혹은 호감순 정렬에 의한 해당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데 집중했다. 이는 판결문에도 공감 클릭 혹은 ‘접기 요청’에 의한 조작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30대의 36.8%가 뉴스기사보다 댓글을 더 신뢰해

여기 간략하게 댓글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요약하겠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댓글을 작성한다는 국민은 21.1%, 댓글을 읽고 공감이나 비공감에 표시한다는 국민은 30.9%, 그리고 국민 70.2%가 댓글을 읽고 있다고 답했다.²⁾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은 81.6%에 달했다. 뉴스를 접해본 만 19~59세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의 통계이다.³⁾

그 뿐 아니다. 언론인들이 들으면 대성통곡할 일인데, 우리 국민 30%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보다 댓글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30대의 36.8%는 기사내용보다 댓글을 더 신뢰하고 있다.⁴⁾

댓글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라고 84%가 답했다. 결국 댓글은 우리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댓글 저널리즘으로 부른다. 뉴스 기사가 일방적 통로라면 댓글은 쌍방향으로 이것이 진정한 여론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 안철수는 누군가가 MB아바타라는 댓글을 써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댓글을 맨 위로 올려놓아서 피해를 본 것

안철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안철수를 많이 언급한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대로 안철수를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댓글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드루킹 일당은 안철수를 비난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 ‘댓글이력’ 공개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을 찾았다. 바로 순공감순 정렬방법을 활용하거나 ‘접기요청’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정확히 짚어내어 심층 보도를 했다. 예를 들어 TV조선이 2018년 5월 11일에 보도한 방송내용은 매우 탁월한 분석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밖

2)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05.30.발행

3) 글로벌미디어 인텔리전스 그룹 발표(<http://isentiakorea.co.kr/index>)

4)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05.30.발행



에 없었던 것은 가장 막강한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오히려 3위, 4위는 적당히 지원하면서 2위의 표를 깎아먹게 하는 방법도 구사한다. 그러니 이를 아는 선거전문가들에게 문재인인의 적(敵)은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닌 안철수였고, 그래서 안철수를 집중 공략했던 것이다. 방법은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특정 댓글의 공감이나 비공감에 클릭하기,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는 MB아바타로 집중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40%를 넘던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드루킹 일당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러한 자세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TV조선이 보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만 골라서 숨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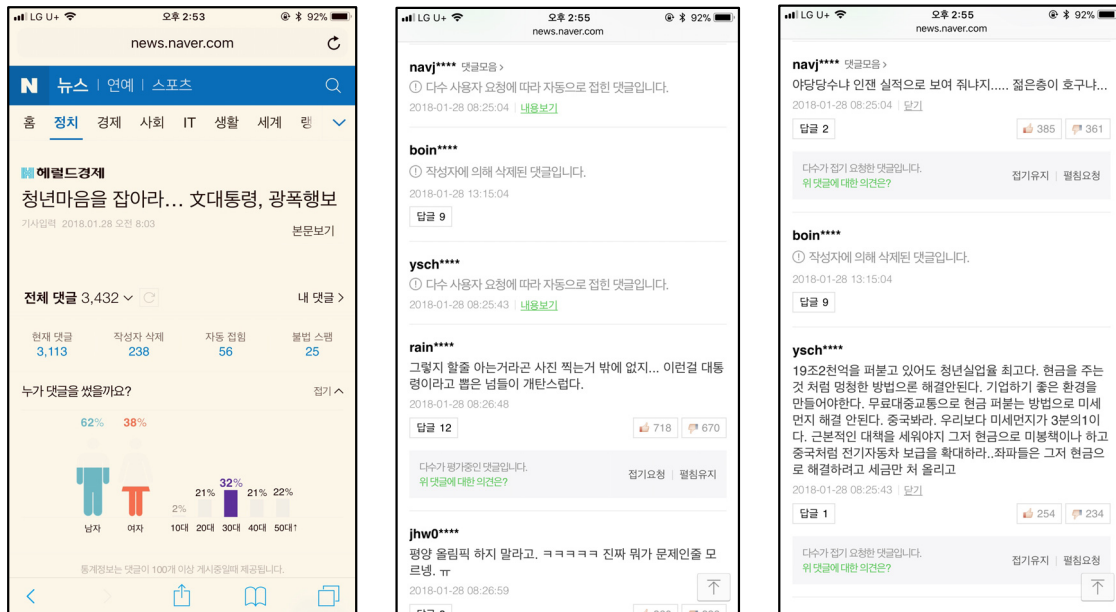
디지털시대이자 쌍방향 의사소통이 일상화되어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표심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드루킹 여론조작의 충격적 사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다.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여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한 사례는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작된 142만개의 댓글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발표된 극히 일부의 사례 가지고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판결로 극도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기막힌 출구전략을 찾았는데 바로 5.18이다. 142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의 판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5.18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려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김경수, 김동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보면 이를 확히 알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문재인이 곤경에 취하게 될 만한 댓글들이 자동으로 접혔다.

‘접기요청’에 의한 여론조작 사례 모음

■ 청년마음을 잡아라 文대통령, 광폭행보/ 헤럴드경제/ 2018.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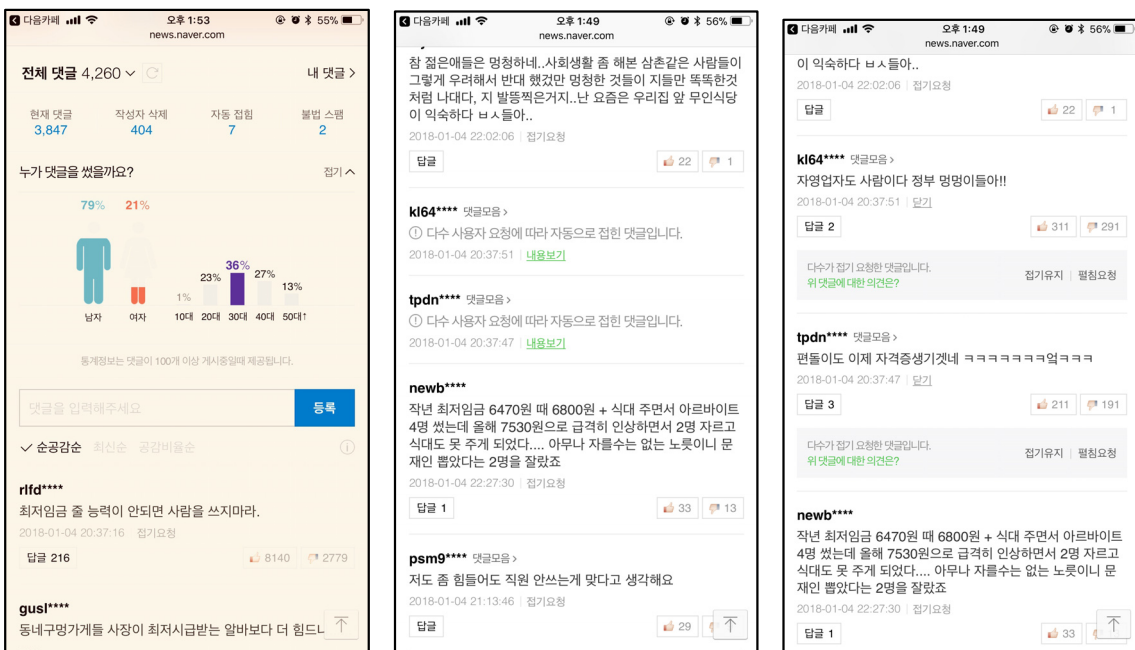
- ▷ 야당당수냐 인젠 실력으로 보여 줘야지... 젊은 층이 호구냐..
- ▷ 19조 2천억원을 퍼붓고 있어도 청년실업을 최고다. 현금을 주는 것처럼 명칭한 방법으로 해결안된다.
- ▷ 싫은데 매달리면 더 더 더 싫어지는걸 모르시나요 평소에 생각 많이 하세요
- ▷ 요즘 문재인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대책회의 사진도 그렇고 연출같아서 역겹다
- ▷ 쉽지 않을 듯 계속 실망중이라서
- ▷ 실상은 평양올림픽에 집중하면서 사진이나 찍으러 돌아다니겠지
- ▷ 아니 저새끼 너네가 뽑은거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 ▷ 북한에 굶신거리지만 않으면 될텐데 헛수고하네 ㅋㅋ
- ▷ 당장의 입에 풀칠도 버거운데 장기적으로 봐달라는게 박치오름
- ▷ 참내 ㅋㅋㅋ이와중에 또 사진 찍고 쇼하고 있네 ㅈㅈ
- ▷ 사탕하나 또 줄려고???
- ▷ 어디서 마니본 그림이네 저쪽에서
- ▷ 역시 쏘통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원숭이들
- ▷ 북한과 이면 합의를 밝혀라 안 그러면 탄핵대상이고 적폐다
- ▷ 북한이랑 화합하는 것 좋지만, 숲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봤음 좋겠습니다. 굳이 단일팀 만들어서 선수들 가슴에 큰 상처주고 북한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야 말이 됩니까?
- ▷ 와 사진만 김정은으로 바꿔봐라...
- ▷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히려고 대통령했냐???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고 대통령했냐???
- ▷ 북의 각설이 테러집단 끌어들여 올림픽 난장판 만든 사람 누구니까?



- ▷ 초보 운전수가 과속하다 사고 크게 난다
- ▷ 여욕시 쇼통령
- ▷ 눈치 절라 살피네 여우같은 색히 독심도 없고 매갈난들 등에 업고 대통령 됐으니 정상적일리가 있나
- ▷ 쇼를 해라 쇼
- ▷ 너무 싫어
- ▷ 하는 게 다 뻔하다
- ▷ 인스타 대통령 같음 맨날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다님
- ▷ 문재인 지지하는 젊은층들 보니 전부다 백수 아니면 노가다 뛰는 저학력층이더라. 이걸 부정할 수 없는 팩트
- ▷ 청년 고급일자리 빵꾸나니 어린이 집인가 야 이 미친 국호의원 놔들아
- ▷ 쇼 감성 이미지관리 본 만큼 봤고 이제는 결과물로 평가할 시기가 온 거 같음
- ▷ 때리고 싶다
-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줄 알았는데 기회를 뺏어 북한주더라 썩리 질러
- ▷ 무슨 구라치려고 애기들 한테까지 애라이 청년들이 니말을 누가 믿노 그냥 처박혀 있는게 그나마 속안뒤집겨!!
- ▷ 이제 2030도 당신의 진면목을 간파했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은 무뇌아 문빠
- ▷ 마음 떠났어요
- ▷ 이제는 하다못해 어린이집에서도 북한홍보하려고 하네 ㅋㅋㅋ
- ▷ 보여주기 역겹다 그냥 연예인 해라
- ▷ 연예인병 걸린 치매틀딱 할배
- ▷ 쇼통령 새기 하
- ▷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미 민심은 떠났다
- ▷ 문재인 너도 임기끝나면 껌방행이다
- ▷ 물리나라 문재인, 문재인 아웃, 더불어민주당 아웃
- ▷ 돌아다니면서 수습 차원의 쇼 때려치우시오
- ▷ 인기 얻으려 유치원 가는 것 부터가 참 수준이 알만하다 저양반이 여태껏 한게 뭐가 있지?
- ▷ 어디가서 한마디 던지는데 그 돈은 다 세금인거는 아냐?
- ▷ 2030이 무서운 거는 맘 떠나면 뒤없습니다. 이제야 사탕발림 하면 돌아오는 그리 순진한 지지층이 아니에요 바이염
- ▷ 순진하고 착하고 사회 정치 때 안묻은 20대 감언이설로 꼬셔서 표반이 만들지 마라
- ▷ 이새끼한테 기대 버린지 오래다
- ▷ 문재인을 보면 마오쩌둥이 연상된다. 어리석은 것들에 집착해 중국인민을 4000만명이나 굶어죽게 했지.

- ▷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한다.
 - ▷ 진짜 대통령씩이나 되는 놈이 북한동구멍 빨면서 사진놀이냐 하고 앉아 있네 이게 나라냐
 - ▷ 외교는 등신, 경제는 실신, 안보는 불신, 북한은 맹신, 중국엔 굶신, 평창은 망신
 - ▷ 또또또 세금으로 쳐바르려고 제발 세금 말고 머리를 써라
- (51개의 접힌 댓글)

■ 최저임금 7530원 그러면 다른데 알아보세요/ 채널에이/ 2018년 1월 4일



- ▷ 최저임금 오르고 정규직 연봉오르고 각종 물가는 더 오르고... 답답하다
 - ▷ 자영업자도 사람이다 정부 멍멍이들아
 - ▷ 편돌이도 이제 자격증 생기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얼 ㅋㅋㅋㅋㅋ
 - ▷ 청와대 가서 알아보면 될건데....
 - ▷ 최저시금도 안주고 징징대는 점주나 4대보험도 돈깍인다고 안하는 알바나 다짜고짜 시급부터 올리는 정부나 헬조선 잘 돌아간다
- (5개의 접힌 댓글)

■ 트럼프가 던진 5개의 창..한국, 반도체마저 찢리면 '치명상'/ 조선일보/ 2018년 1월 24일



- ▷ 미국을 화나게 하면 중국급의 보복이 온다. 약소국의 비애
- ▷ 삼성 엘지여 이참에 본사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러면 간단히 해결된다

■ 평창은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 안가/ 머니투데이/ 2018년 1월 23일

- ▷ 그걸 이해를 못하는 너네가 제일 이해가 안간다
- ▷ 여당 의원 김태년도 평양올림픽이라고 인정하던데요?
- ▷ 난 니들이 이해가 안가. 진짜 청와대 있는 인간들 뇌에 북한밖에 없냐

■ 도피 목도리 두르고 서울 온 현송월, KTX 타고 강릉으로/ 중앙일보/ 2018년 1월 21일

- ▷ 환경대통령이 동물모피 초청 ㅋㅋㅋㅋㅋㅋ
- ▷ 반문재인 세력이 치밀하고 엄청난데 북한 좋게 묘사하냐? 북도 대범하게 양보해라 문재인 정부 고분분투 하는거 안보이나
- ▷ 북한주민들은 쫄쫄 굶는데 모피목도리? 존나 부자네 ㅋㅋ
- ▷ 사모님 오셨네 저거만한 표정봐라 진짜 역겹다
- ▷ 문재인 북한대통령

■ 북, 현송월 등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전격 취소/ YTN/ 2018년 1월 19일

- ▷ 또 속았네 ㅋㅋ
- ▷ 아주 가지고 노는구나 거기에 좋다고 장단 맞추는 정부도 코미디고 쫄쫄
- ▷ 이런 찌질이들을 모시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 ▷ 문또속

■ 정부 "전통문 보내 북 금강산 행사 취소에 유감 표명"

- ▷ ㅋㅋㅋㅋㅋㅋ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 ▷ 그저 굶신굶신
- ▷ 운전자론 좋아하네 ㅋㅋㅋ 택시영업 한번 잘해보겠다고 큰 맘 먹었는데 강패가 뒷자리에서 토하고 먹살잡고 창문깨고 뺨뺨고 헐박중



■ 北신문 “내외 반통일세력, 북남대결 격화 날뛰고 있어” 주장/ 연합뉴스/ 2018년 1월 28일

- ▷ 통일을 바라기는 하나?
- ▷ 김정은 제거 좀해라. 북한이나, 자유당 놈들 둘다 꼴보기 싫다
- ▷ 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없이 이를 수 없어요
- ▷ 대한민국은 000인가 맨날 똑같은 놈들한테 당해도 똑같이 굶신 거리네 ㅋㅋㅋ 특히 중국 북한 ㅋㅋㅋ 그냥 윗대가리들은 다른 세상 사는 듯 길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 정치인 시켜도 지금보단 잘할 듯
- ▷ 햇볕정책 촛불혁명 = 개 잡소리 잘하는 것들이 쓰는 말
-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잊은 우리 ~ 반성좀 합시다.
- ▷ ㅎㅎㅎㅎ 문빨갱이 덕이지
- ▷ 북한은 ISIS임 로켓맨은 조두순보다 악한 놈임! 민족반역자 김씨일가를 없애고 통일 해야함
- ▷ 그냥 두자 100년이고 200년이고 알아서 망한다.. 왜 우리가 조급하게 남남갈등을 벌이야
- ▷ 이상한 나라다
- ▷ 지랄하고 자빠졌네! 툭하면 뒤통수 치는 새끼들이 관계 개선이라? 어이가 없네
- ▷ 애들 돈 떨어졌다.. 이산가족 금강산관광 카드 이제 곧 내민다. 두고봐라
- ▷ 스르도 풍년이야 돈주는데
- ▷ 2030 애들아 정신차려라. 난 주사파들이랑 같이 대학다녔다. 내가 졸업할때쯤 갑자기 일순간에 다 사라졌다가 지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왜? 수괴 림동지가 있으니까?
- ▷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야 한다. 공산당 사회민주주의로는 절대 안된다
- ▷ 벌써 얼마나 준거나
- ▷ 대화를 빌미로 핵무력을 위한 돈 받을려는 수작. 북한을 절대 믿어서는 안됨
- ▷ 몇 개월전까지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핵개발 생화학무기
- ▷ 인민들 고달프다. 날씨도 추운데 뭘 발광들 하나??
- ▷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었지. 구실을 만들어 올림픽에 참전불가 통보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남쪽 괴뢰와 미국놈들 때문이라고 탓하며 악랄하게 비판할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 ▷ 재들도 쏘만하네
- ▷ 세계가 제재하는 북한지원하면 대한민국도 제대 당해야 한다.
- ▷ 심리적 대남 전술을 이용하지만 주사파 이외에는 북한의 말 만 믿는 사람 없음을 알아야지
- ▷ 애초에 어뢰썰서 수병 죽이고 포 썰서 민간인 죽인 건 너네지,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는 미싸일 썰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민간인 1000만명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도 너네고.
- ▷ 일단 핵무장부터 포기하고 얘기하면 믿어주겠음



- ▷ 통일같은 소리하구있네 동네 건달 조폭도 저희들 보다는 낫다.
(26개의 접힌 댓글)

■ 文대통령 댓글 호위무사... 나는 달빛 기사단이다/ 중앙선데이/ 2018.01.21.

- ▷ 문빠에서 탈출하는건 지능순이라던데 ㅋㅋㅋ
- ▷ 왜 이런 맹목이 자랑스럽나? 그냥 광기다
- ▷ 읽어보면 나 홍위병이에요라고 홍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구만 이걸 자랑이라 인터뷰했냐?
- ▷ 건강식품 8~9개씩 먹으면서 양념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내가 달창단이었으면 차라리 모임을 가져서 국익에 도움 될만한 사항을 토의 후 제출했겠지. 니들은 그냥 여론조작 쓰레기들일 뿐이야
- ▷ 문빠들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는거네. 자발적이니까 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말이 사실이라 해도 남이 자유롭게 쓴 글에 접기요청하고 비열하게 악플달고 그러는게 성숙한 사회의 표현의 자유인가?
- ▷ 달빛기사단은 자발적이고, 일베박사모는 지령 받는 걸 보진 않았지만 배후가 있어보인다? 신개념 개소리네 지령과 관련 있던 없던 양쪽 다 댓글 조작하면서 떼떈한 척 하네
- ▷ 무조건 지지라니 아이돌 팬덤도 그러진 않아요 결국은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시도잖아요 우리 정치문화 많이 걱정됩니다
- ▷ 달창들이지 ㅋㅋㅋ 기사단을 개불 ㅋㅋㅋㅋ
- ▷ 당신들의 집단적 행태는 여론선동이고 사회악입니다.
- ▷ 네이버의 접기기능이 이런 저능집단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쟁점이 될만한 문제인 비판기사엔 무조건 접기가 되는데 내용상 반사회적이거나 욕설, 인신공격 등 노출까지 막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찬성이 반대보다도 더 많은데 극렬 문꼴오소리들 몇백명만 달라붙으면 그 댓글은 차단된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준은 안 되고 반대를 열심히 눌러도 쪽수에서 밀리는 문꼴오소리들한테는 접기 기능만큼 좋은 것이 없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고 이판결 만든 이유가 뭘까?
- ▷ 박사모는 달창들에 비하면 애교수준이었네
(12개의 접힌 댓글)

드루킹은 8만 건이 넘는 신문 기사를 손댔다. 위에 기록한 사례는 불과 9건의 신문 기사이다. 도대체 8만 건이 넘는 신문 기사라면 어느 것인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뉴스를 다 조작한 것이다. 여기서 8만 건이 넘는 조작당한 신문 기사 중 극히 일부의 신문 기사와 그에 달린 댓글이 '접기요청'에 따라 숨겨진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정리해보았다.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접기요청’ 으로 숨긴 댓글 현황

문재인 비난만 골라내 숨긴 댓글조작단의 실체

**댓글날조 주권찬탈
범죄정권 물러나라!**

**김경수와 백원우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박영수 특검처럼
야권인사들로
댓글특검 구성하라!**

**홍준표는 목숨걸고
범죄정권
탄핵에 나서라!**

**2018년 1월 한달 동안
5,620개의 댓글 조작**

2018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47	159	68	123	179	202
7	8	9	10	11	12	13
188	276	236	236	176	102	59
14	15	16	17	18	19	20
25	109	270	202	141	122	39
21	22	23	24	25	26	27
87	143	244	178	473	310	375
28	29	30	31			
260	190	189	112			



(문재인을)“진짜 한대만 갈기고 싶다”
“오합지졸정부라는 걸 인정한 꼴이네”
“내려와라 문재인! 어버버거리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우리는 이런 댓글을 볼 수 없었다. 드루킹 일당이 조작했기 때문에!
네이버 여론조작 국정농단을 심판하자!

(2018년 4월에 만든 포스터)



▶ 김경수는 몸통인가 깃털인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SNS지원단 단장과 SNS기동대 대장은 불법사조직을 운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에 처해졌다.⁵⁾ 2012년 당시 SNS지원 단장이었던 조한기는 대선 당시의 불법 사조직 운영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4년 벌금 90만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해 서산태안에서 조한기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고 문재인은 그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다시 2017년 대선에서 조한기는 문재인 캠프의 SNS팀장으로 임명되었다.⁶⁾

대통령 당선 이후 조한기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거쳐 지금은 실세 중의 실세인 청와대 제

1부속실장으로 있다. 문고리 3인방을 연상케 한다. 이쯤 되면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깃털이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조직이었던 SNS지원단 조한기 단장 밑에 있는 ‘대응 2팀’에는 송모씨가 포털의 댓글 관리를 맡았다. 그 송모씨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경선이 끝난 후 ‘경인선에 가자’고 외쳤다. 경인선은 김동원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다른 이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약자이다.

김경수와 김동원 그리고 조한기와 송모씨는 댓글이 곧 여론임을 꿰뚫고 있었다. 기사 하나당 수천개의 댓글이 달려도 댓글 정렬방법 ‘순공감순’에 의해 상위 20개까지만 조작하면 댓글 전체를 조작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더보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20개 이하의 댓글만 읽는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경수 지휘 하에 473일간 8840만개의 공감 클릭, 142만개의 댓글조작은 네이버 뉴스가 제공하는 ‘댓글 많은 뉴스 랭킹 30’ 전체 기사에서 매일 매일 순공감순 상위 20개의 댓글을 다 조작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렇듯 김경수, 김동원이 공모한 네이버 댓글 조작은 완벽한 여론조작이며, 여론 조작에 의해 민심이 조작되고, 그 민심으로 투표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부정 대선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이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를 알았다면 지난 대선은 후보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 대선이 된다.

5) 사건번호 2014노431 판결문, 대법원 판례 사이트

6) 뉴스타파 2016.03.16. 오대양기자

▶ 향후 대안

먼저 허익범 특검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 142만개 중에서 118만개가 김경수와 공모한 댓글 조작이라고 한다. 신문기사의 건수는 8만 건이 넘는다.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의 순위가 조작되었는지 밝혀진다면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부정 대선, 나아가 대선 무효로 연결될 수 있다.

법적 심판은 나중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드루킹 댓글조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판단이 가능하다. 허익범 특검은 김동원과 김경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댓글조작 142만 건을 규명했어야 한다. 142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중대한 사건 앞에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익범 특검의 중대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42만개의 댓글 조작이 여론조작으로 작동했다는 것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 오늘 공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네이버의 댓글이 조작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첫째, 댓글정렬방법은 최신순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야 한다. 순공감순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둘째,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언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으로, 네이버 아이디는 1인 1개까지만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대통령부정선거조사특위를 구성하라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이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에 관해서 국회는 ‘제19대대통령부정선거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심각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미이다.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 일당은 여론조작으로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김경수와 드루킹의 선거부정 사건’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 특위의 진상규명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드루킹 사건 제보 은폐 의혹 진상규명

문재인 지지자 최모씨가 2017년 3월 23일 현재 드러난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고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또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5월 5일에야 검찰에 이관했다. 대선 4일 전이다.

2)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공모 연간 운영비 11억원의 출처를 밝혀야

비누 팔아 연간 11억 원의 경공모 운영비를 충당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11억원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지면 몸통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3) 조한기의 2012년 대선 불법 사조직운영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문재인의 개입여부 진상규명

정치적 의사결정은 김경수, 여론조작의 의사결정은 조한기일 가능성이 있다. 조한기는 2012년 대선부터 불법사조직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SNS 및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 문재인과 조한기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4) 경인선 가자! 김정숙 여사와 경공모의 공모 관계 진상규명

허익범 특검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가자’는 발언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말았다.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미리 보고받고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조작된 댓글 142만개가 어떤 것인지 완전 공개해야

특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작된 댓글 142만개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누구지,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범인과 공범 그리고 배후세력을 규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조작된 댓글이 여론조작이고 여론조작은 민심을 바꾸고 선거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사실 국민들은 누가 범인인가도 알고 싶지만,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적 공분에 따라 정치적 판단의 잣대가 변한다. 이것이 두려운 정부여당은 피해 규모를 숨기기 위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토론 1

김경수 일당의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정치여론
조작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경수 일당의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정치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 민주주의 정치, 여론정치와 언론의 자유

- 국민주권국가,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요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Public opinion)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정치는 바로 여론정치를 뜻함(여론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표명하는 생각과 의견으로 정의되고 있음)
- 올바른 정치여론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는, 자유민주 정치의 존립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중요성)
-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적 요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여론 형성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참정권(정치권)의 토대를 이룸
- 참정권(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대의제 하에서 선출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임
- 또한 참정권 존립의 바탕이 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요소로서 가치질서인 객관적, 기본적 법질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권력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에 기초하는 사인 간에도 적용되는 對私人的 효력을 가짐



2.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언론,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치여론의 형성 주체는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 이익 집단,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나 시민 개개인 등이 있으나, 요즈음처럼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 매체 등 인터넷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과 그 영향력이 더욱 주목 받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0.2%가 인터넷 뉴스에 따르는 댓글을 읽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81.6%에 달하고 있음(국민 30%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보다 댓글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바 있는데, 젊은 층일수록 그 비율이 증가함)
- 정보화 시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기초가 되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현대 헌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사전억제금지, 명확성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원칙 등)
-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그 상대방이 공권력이든 사인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종적 수단으로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제19대 대선을 앞둔 정치여론 조작 사건의 규모와 성격

1) 대규모 정치여론 조작 사건

- 2016. 12. 4.부터 2018. 2. 8.까지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불법적으로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
- 2017. 2. 5.부터 2018. 2. 1.까지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불법적으로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

- 2017. 3. 3.부터 2017. 4. 29.까지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불법적으로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불법 ID 3,013개를 동원하여, 총 76,083건의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1,188,866개를 대상으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계 88,401,214회의 기계적 자동 클릭(공감/비공감) 수법으로 인터넷 뉴스 댓글을 불법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주로 19대 대선 관련 정치여론이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함

2) 대규모 정치여론 조작사건의 성격

- 댓글 조작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 76,083건의 뉴스기사에 댓글 1,188,866개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들 약 118만명이 댓글 순위 조작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음
-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에 의한 인터넷 정치뉴스 댓글 조작사건은 바로 국민의 정치여론(선거여론) 조작사건이고,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 측의 정치여론 조작에 의한 19대 대선은 곧 ‘不正 대선’임

4. 19대 대선과 김경수, 드루킹(김동원)의 역할

-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친노’ 그룹의 핵심이자 노 대통령의 사망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인물임
-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후보 대변인, 후보 수행팀장으로 밀착 수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민주당 내 협치부대표를 맡아 당과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함

- 김경수는 대선 승리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고, 다음해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차기 대선에서 노무현, 문재인 등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르게 됨
-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넘겨준 재벌개혁 공약 보고서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정책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채택되는 등 드루킹은 초기부터 김경수의 비선실세였다는 의혹이 있음
- 드루킹이 김경수의 요청에 따라 극비로 작성한 다음 2017년 1월 6일 김경수에게 전달한 ‘공동체(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건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동 문건에는 검토배경, 준비상황, 지원방법, 추진계획, 건의와 제안의 형태로 나뉘어 나뉘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즉시 공동체가 1개 재벌 주식을 매입해 10월까지 오너를 교체하는 재벌개혁을 하고, 2018년 3월에는 1위부터 20위권 중 삼성, SK, 현대중공업 등 3~5개의 재벌 오너를 교체하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방법은 경공모와 같은 공동체가 주주로 제안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 행사와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찬성하는 외국계가 연합해서 진행한다. 10월까지의 대립과 같은 단수재벌 오너를 교체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언론·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많은 수의 주주를 동참시킬 수 있음’이라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 과정과 비슷한 내용이 있음
- 위 문건 앞부분에는 2017년 출범했다는 ‘경공모’라는 단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드루킹은 경공모를 “경제민주화(재벌개혁)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들의 모임으로 기존 시민사회단체들(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형태로 창립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음
- 기존 시민단체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란, ‘재벌 순환출자구조의 해소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 오너 교체가 필수적인데 ‘공동체(경공모)’는 해당 재벌 핵심기업의 주식을 사 모아 주주 제안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결권을 확보해 오너 일가를 포함한 이사진을 교체해서 재벌 오너 일가의 영향력을 축출하는 방식을 말함

- 또한 “재벌개혁은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정권과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밝혀질 경우 기득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경수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위 재벌개혁보고서 중 제5항 건의와 제안에 ‘재벌의 순환 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 주시면 좋겠음’,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 민주당에 대한 재벌개혁의 구체적 요구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2017년 1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초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전달한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서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경공모의 수천 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드루킹은 경공모가 단순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김경수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5. 피고인 김경수에 적용된 죄목(허위법 특검의 기소 및 판결)

1)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죄의 일종)]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터넷 포털 회사인 네이버, 다음, 네이버의 업무방해)
- 구체적으로는, 김경수 일당이 댓글조작(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등을 통한 허위의 정

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버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함(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2) 선거와 관련한 이익제공 의사표시 범행 :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행위
- 구체적으로는, 댓글 작업(댓글 순위 조작)에 의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경수가 드루킹(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를 주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당시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함(드루킹에 의한 오사가 총영사직 요청은 실패)

6.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 및 미진한 부분

1) 드루킹 특검의 수사결과

-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를 위한 법으로 2018년 5월 21일 국회 통과되었는데, 본래 야당에서는 특검법 명칭에 본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빠지게 되었음
- 당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 ①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 ② 위 ①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③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④ 위 ①사건 내지 ③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임

- 2018년 6월 27일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팀을 꾸린 다음 해당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8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2개월(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특검팀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특검수사를 종료함으로써 1999년 이래 그 동안 13차례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최초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음
- 당시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고 발표하였던 바, 당시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여당의 공세 또한 연장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음(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라면서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됐던 것에 반성하라'고 비판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익범 특검은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60일간의 수사결과, 특검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회원 10명을 기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속된 경공모 회원 6명(드루킹 김동원, '둘리' 우모, '솔본아르타' 양모, '서유기' 박모, '초보' 김모, '트렐로' 강모)과 불구속된 회원 3명('아보카' 도두형 변호사, '파로스' 김모, '성원' 김모) 등 9명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에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또한 회원 9명 중 드루킹, 도두형 변호사, 파로스 등 3명과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음
-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역시 불구속 기소하고, 김경수에게는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에 업무방해)와 함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에게 오사가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도 적용되었으며, 보좌관 한모에게는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음

2)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 : 공직선거법위반



가)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또는 기존 조직 이용

- 드루킹 김동원이 2009. 1. 5.경부터 개설하여 운영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는 ‘열린 카페 경공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과 함께 제19대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거관리법상 불법 조직인 사조직에 해당함
- 김경수의 요청에 따라 드루킹이 극비로 작성한 ‘공동체(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건에 의하면, 드루킹은 경공모를 ‘경제민주화(재벌개혁)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들의 모임으로 기존 시민사회단체들(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형태로 창립’된 조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경공모’는 제19대 대선을 전후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불법 사조직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 설사 위 ‘경공모’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불법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등은 기존의 설치된 조직에 해당하는 ‘경공모’를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하였음(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나) ‘경공모’ 활동자금과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7조)

- 드루킹의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파주 출판단지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는 2010년 설립 이후 그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으면서도,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사용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 왔으며, 평소 4~5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인건비 및 관리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을 더하면, 월 수천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됨

- 드루킹 일당은 연간 운영비 11억원 정도를 강연료와 비누 판매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한 바 있으나, 강연료와 비누 사업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보임(드루킹의 출판사에 1회 입금된 강의 수입은 175만원 선으로, 연 24회 강연 기준 4200만원에 불과하며, 비누 판매 역시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연 6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수익 구조였음)
- 더구나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이 10년 간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생활비도 벌어들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또한 드루킹 부인의 명의인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도 드루킹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등 연간 11억원 가량의 운영비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
- 드루킹 일당의 활동비 또는 경공모의 운영비에 대한 출처조사를 제대로 하여 그 돈이 민주당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 또는 제3자로부터 나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임(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3조, 114조, 115조)

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위반(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
-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 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해야 함
- 드루킹 일당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포털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



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라)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 김경수 일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20:00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불법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
- 김경수 일당은 공식 선거운동기간(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방법으로 정보통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음

마)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공직선거법 제253조)

-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그 외 경쟁자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음

바) 기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및 상대 후보자 비방 범행 가능성 검토(제82조의4 제2항)

7.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필요성

1) 허위법 특검의 한계와 추가 특검의 필요성

- 최초에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처음부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여권 실세이자 친문인 김경수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일었음

- 또한 이미 2018년 3월 21일 경찰이 드루킹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24일 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이나 경찰 수사 착수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피의자들이 민주당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등 검경의 수사 축소나 은폐 의혹 속에서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았음
- 허익범 특검의 경우 국민의 지지율 70%인 문재인 정부 초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겨우 2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청와대 인사 등 정권 실세를 상대로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내막과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허익범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에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응답은 45.5%, 반대 의견은 41.3%로 찬성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음)
- 위와 같이 허익범 특검의 수사와 김경수의 판결 선고에 따른 새로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한 ‘19대 대선 부정선거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또한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가 수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므로 여야 정치권에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제도적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국회의 의결과 국회 내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음)

2)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대상

가)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

처음 김경수를 드루킹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차례 만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사례비 200만 원을 받은 청와대 정부비서관 송인배(전 제1부속비서관), 드루킹의 오사가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도두형 변호사를 만난 민정비서관 백원우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송인배는 특검 이후 2019. 1. 16. 서울동부지검에서 그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2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음)

나) 드루킹의 청와대 인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드루킹이 2018년 4월 9일 임명된 오사가 총영사에 대한 인사정보를 그가 임명되기 3달 전



에 이미 알았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겼는데, 정부 고위직 인사 내정자 및 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언론 보도 한참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드루킹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단순한 자발적 조력자가 아니고 평소 문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다)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민주당의 사전 인지 의혹

국민의당이 고발한 드루킹에 대하여, 나중에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고발취하를 요청하는 등 드루킹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사전 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음

라)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문재인인의 사전 인지 의혹 : 문재인과 김경수의 공범관계 성립 여부(당선무효 사유)

2018년 8월 초 허익범 특검은 대선 당시 문재인인의 수행팀장이던 김경수의 드루킹 일당과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당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인 '경인선[經人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 배경에 문재인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인이 드루킹의 파생조직인 '경인선'의 존재를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김경수가 경공모의 존재 등을 문재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문재인은 경공모란 이름이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하여, 이를 전해들은 드루킹이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었다고 알려짐, 기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가자' 발언 등)

마) 청와대의 허익범 특검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

2018년 2월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추가 폭로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지난해 7월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자신을 포함한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특검에 제출한 USB의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힘

바) 2017년 3월 28일 드루킹의 느낌나무 출판사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의혹



2017년 5월 제19대 대선 직전 무렵 중앙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 5개월 뒤 불기소처분 종결함

사) 검찰과 경찰의 19대 대선 관련 드루킹 및 김경수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 의혹

아) 드루킹의 노회찬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과 자살 의혹

자)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차) 기타 허익범 특검팀에서 수사가 미진한 공직선거법위반 의혹

8. 공직선거법위반과 공소시효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임(공무원의 경우는 10년)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됨

○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국민투표법위반이나 선거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선거비용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적용됨

*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언론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된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침해자가 권력자이든 사인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후적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토론 2

김경수 판결에 대한 반 헌법적인
정부의 인식 문제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김경수 판결에 대한 반 헌법적인 정부의 인식 문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2017년 5월 드루킹(김동원)의 경공모(경인선) 회원들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라인 포탈의 기사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사건

- 경공모 회원과 매크로(킹크랩)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 함
- 김경수는 이런 댓글 조작 상황을 선거캠프에 알리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였음. 드루킹은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이의 보답으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으로 요구했고 거절당했음. 이에 보복으로 킹크랩을 이용하여 평창올림픽 부정 여론 조성 및 문재인 비방 댓글로 대응함.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 2018. 6. 27. 허위법 특검 개시
- 2019. 1. 30.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 김경수 판결문

-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댓글 작업 행위에 직접 관여해 범행 전반을 지배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다 전달받아, 공공 가공의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보고나 기사 전송을 받았으며 나아가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는 등 직접 범행 일부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 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한 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행위에 공동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

-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으로 하여금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나아가게 함.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됨.
이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건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더민주 소속 정치인이라 판단.
-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함.
또한 댓글 작업 행위와 드루킹이 도 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혐의도 지방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임.
- 드루킹 김동원이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과 경쟁하는 세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한 기사가 총 8만 건, 2017년 1월 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는 하루 약 100개 정도였다가 2017년 4월 초 경부터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 작업량이 5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후에도 평균 300개 정도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하고 김경수에게 보고.
- 김경수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URL 전송하고 그중 9건은 소위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경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초까지 집중돼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된 이후인 20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 접어든 때부터 대선 기간까지 7건 전송하여 드루킹 일당이 대선 관련 기사에 댓글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

□ 여론조작의 문제점과 헌법위반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선거라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정치과정이 뒤따름. 따라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하며, 셋째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따라서 민주주의는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주권자의 합리적 주권행사를 전제로 하



며, 대통령은 이러한 합리적 주권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선출되어야 함.

댓글 조작 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 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를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댓글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과 제7장 (선거관리 :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적인 것임.

□ 현 정권의 반헌법적 인식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크게 비판하며 탄핵을 주장함 -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심에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장임.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는 환영을 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경수에게 내린 판결을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여당으로서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토론 3

김경수 판결, ‘대선불복, 판결불복’
무엇이 옳은가

이헌 변호사
(한변 공동대표)





김경수 판결, '대선불복, 판결불복' 무엇이 옳은가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토론자에게는 '대선불복'이라는 단어가 남다르게 여겨진다. 토론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 불복하여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소장 작성에 참여하였고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당선무효 소송은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¹⁾을 계기로 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조작을 문제 삼았고, 선거무효 소송은 개표조작 이외에 이 후보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았으나, 당선무효 소송은 일부 선거구의 재검표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없자 제기된 비난여론으로 소를 취하하였고, 선거무효 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토론자가 관여한 대선불복 사례 이후 2007년 제17대 대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현 집권여당측이 참패하고 '폐족 선언'을 한 이후 수개월간 광화문일대를 마비시키며 정권타도까지 주장하였던 좌파세력의 광우병 사태는 사실상 대선 및 총선 불복이었고,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현 집권여당 측의 대선 불복이었다.²⁾ 이 문제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은 제17대 대선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것이고,³⁾ 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더불어 제18대 대선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관련된다. 이들도 대선불복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되므로, 결국 대선불복은 2002년 이후 대선 때 마다 통과의례와 같이 지속되던 사안이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의 3·15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선의 역사적·헌정사적 의미

1) 개표조작설의 유포자는 특수학교 교사로 밝혀졌고, 2003년 4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시사인 2013. 1월 14일 보도 참조).

2) 현 집권여당은 당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일이 터졌다."고 하면서 특검을 주장하였다.

3)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2008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최근의 대선불복 사례에도 나타나듯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한 이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대선무효에 관한 주장은 민주국민의 지극히 당연한 주권 행사인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포털의 댓글 순위조작에 의한 여론조작에 공모·관여하였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당수 국민들은 대선 무효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정권은 정권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응하여 국민을 납득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정부로서의 최소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그저 “터무니없다”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고 대응하고 있는 것은, 오만함을 넘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짓밟는 처사이자, 자신들이 제기하였던 그동안의 대선불복 주장이 없었던 일인 척 눈속임하는 ‘내로남불’ 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대선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참조).⁴⁾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집권여당과 그 지지세력에서 이번 김동원(드루킹) 댓글사건은 민간 지지자에 의한 댓글 조작

4) 2018. 7. 12. 선고된 제19대 대선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에 있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 이외에 “문재인 후보, 추미애와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진 언론보도, 검찰의 관련 수사와 촛불집회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 반면,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국정원 댓글 작업은 391개의 트위터 ID를 이용하여 29만 여건의 댓글작업이 있었고, 기사에 공감·비공감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경우는 1,200여 차례로서 간단한 매크로 작업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드루킹 댓글 작업은 인터넷포털 ID 600여개를 활용하여 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단기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원하여 총 8만여개 기사의 댓글 119만여개에 8,840만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였다. 그 규모에 있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드루킹 댓글 사건에 도무지 비교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댓글작업이나 징역 7년을 구형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 보다 20여배가 넘는 댓글 조작을 저지른 이번 판결의 사안에 대하여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2배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련하여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나 후보 캠프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었고, 당시 여론조사나 대선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국정원의 댓글작업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써 드루킹 댓글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진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심이자 수행팀장이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대선 이전 문 대통령이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가자” 발언, 드루킹측과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인 ‘송인배,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납득할 수 없는 만남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선후보 캠프의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었더라도 박 대통령측의 관여가 문제되지 아니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문 대통령측이 관여한 이번 판결의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사건과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내용에 있어 도저히 비교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참조).⁵⁾

포털 내에서가 아닌 해당 언론사에 댓글을 올리게 하거나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댓글

5) 이 판결에서는 선거구 2개동을 담당한 그룹사 직원 70명이 동원되어 571회에 걸쳐 1,000여 명을 상대로 활동하였고, 향응경비 1,486만여 원을 지출하였으며, 선거구민 입당 1,278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당시 장 회장은 34,624표, 차점자인 한나라당 후보는 29,813표를 득표하여 장 회장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운영자와 작성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외국사례와 달리 포털 내 기사에 직접 댓글을 올리게 하는 우리나라의 댓글 시스템에 대하여 여론독점이나 여론조작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토론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은 지난 탄핵 이후 대선 당시에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보면서 이 정권에게 유리한 댓글과 추천 수가 다른 기사의 댓글과 추천 수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난데없이 악성댓글을 거론하면서 ‘내가 MB아바타입니까?’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고, 드루킹 수사 이후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에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와 댓글이 그 반대의 기사와 댓글을 압도하는 역전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2016. 11. 9. 킹크랩을 시연하면서,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판결문 제49면). 그 이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내용⁶⁾이나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해 현 집권여당의 대표가 ‘여론조작’이라고 하여 수사의뢰하고 드루킹 수사에서 이번 판결에 이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본다면, 드루킹의 댓글 순위조작 작업이 대선 당시의 여론과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조형곤 대표님의 주제발표 내용에 나타난 대로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80%가 넘는대거나 우리 국민의 30%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보다 댓글을 신뢰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김 지사가 공모한 드루킹에 의한 여론조작 행위가 없었더라면 제19대 대선에 있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만하다.⁷⁾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선거무효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 대통령측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마땅히 응답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

6) 이번 판결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온라인정보보고로 2017. 4. 14. “온라인의 상황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임(대선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 2018. 4. 17. “네이버등 3대포털은 지난주 초부터 분위기가 우리측으로 넘어왔다”, 2017. 5. 1.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회원수 1백만을 넘기는 17개 커뮤니티는 완전히 문재인 지지”라고 하였다고 한다(판결문 제166,167면).

7)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08%로 2위 홍준표 후보 24%와 17% 차이이었으나, 대선 당시 여론결과에 따라 선거연합의 가능성이 있었던 3위 안철수 후보 21.4%, 유승민 후보 6.8%를 합한 반문재인측의 지지율은 문 후보의 득표율 41%를 훨씬 상회하는 52%에 이른다.

통령이며,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참조).

한편 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댓글 조작 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관한 사실 위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선 후보 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고, 경공모 모임의 자금관계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⁸⁾ 대선의 댓글 여론조작과 같은 위중한 범행을 서슴지 않았고 경공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조직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던 드루킹이 대선 당선자측에게 회원인 변호사 두명의 공직만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악전고투하던 허익범 특검이 그나마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바에 따른 것이고,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던 탓도 있다고 보인다.⁹⁾ 이러한 허익범 특검과 특검법 자체의 한계와 부실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드루킹의 댓글작업 이외에 '재벌개혁계획 보고, 온라인정보 보고, 비선조직, 협력관계' 등에 관한 언급이 있다. 또 드루킹과 무관한 '달빛기사단, 문꼴오소리' 등 문 대통령측 지지세력의 존재와 댓글 활동에 관한 주장도 제기된다. 그리고 김 지사가 대선 이후 드루킹측에게 공직 추천 및 임명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되는 동시에 대선 당시 댓글작업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써 '센다이총영사' 등 공사의 직 제공 의사를 제안한 것이고, 이에 김 지사 이외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도 허익범 특검과 특검법의 한계로서 새로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허익범 특검의 2018. 8. 27.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지원 조직으로 김정숙 여사가 2017. 4월경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드루킹)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 “드루킹의 활동 자금에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있어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했으나 수입과 지출의 세부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인선이 공개된 외부 선거지원 조직인지 여부는 드루킹 판결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조직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측의 관여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9)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10) 이번 판결에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제146면),.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가 악화된 2018. 2. 28.경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하였고, 그 이후 드루킹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통화도 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의 점을 적용하였다.¹¹⁾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정하면서 단서로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범인도피에 관하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김 지사는 2018. 1. 2.경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촬영사 직을 제의하였다는 것이므로, 대선과 관련되던지, 지방선거와 관련되던지 간에 김 지사의 또 다른 공범에 되는 인물에게는 김 지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범인도피죄교사에 의한 3년으로 연장되는 공소시효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형사법리는 아니지만 민사법리상 이행보조자의 고의는 본인의 고의로 보게 되고(민법 제391조), 사용자는 피고용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6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하여도 문재인 대통령측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침묵할 일이 아니라 이행보조자나 피고용인과 같은 지위이던 김 지사의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도처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선후보 캠프의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관한 논란과, 허익범 특검 및 특검법의 한계와 부실함에 따른 새로운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더하여,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부터 특감반장의 지시로 드루킹의 USB 관련보고 이외에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윗선에 보고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세간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

11)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우리 헌정사의 필연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김정숙 여사 등 다른 공범의 관여 여부에 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고, 나아가 '오사카총영사나 센다이총영사 직 제의'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에 해당하거나,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관하여 헌법전문 4·19민주이념에 따른 국민적 저항운동도 예상될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권력집단이 과도한 표현으로 사법부와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와 법관의 독립 등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상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재판 당사자와의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면서 사법농단 세력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탄핵 등 법관의 인적 청산에 나선다는 입장이며, 민변이 주도하는 단체에서는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에는, 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50여회 온라인 정보보고와 8만여건의 댓글기사 목록도 전송하였다고 한다.¹²⁾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범들이 서슬이 퍼런 집권세력에 대해 불리하게 자백하였던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드루킹이 김 지사측의 센다이총영사 제의에 불응하면서 "저희를 부러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거나 JTBC 기자를 거론하며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김 지사가 유죄일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판결문 제84면).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증거의 요지만 1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물증과

12) 이번 판결에서는 "○ 김동원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를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김동원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판결문 제39면).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그 유죄증거가 차고 차고 넘치고 넘쳐 드루킹측이 현 정권과 모종의 뒷거래로도 자백을 번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¹³⁾ 이번 판결은 “소추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형사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범위에 간혀버린 한계가 있으나 이 소송제도상 한계 내에서 이번 판결에서 실시된 사실과 법리는 그 내용과 논리 전개의 치밀함과 방대함에 있어 나무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일부 집권여당의 인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자신의 대선 후보측이 관여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거나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삼아 김경수 판결을 폄훼하고 국민들에게 허위·선동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집권여당의 반헌법적·반민주적 대응은 이번 판결의 담당 재판장과 그 상급심 법관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판결불복이 아니라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다. 그간 이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 권력을 교체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토론자는 이 정권이 조종하였다고 의심되는 노조의 파업과 간부들의 사퇴요구 및 변호사들의 해임건의에 대해 사퇴를 거부하자, 그 이후 법무부의 흠집내기 감사로 기관장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독단적인 운영’으로, 기관 홍보물을 ‘개인 홍보물’으로, 상급기관 승인 후 지급한 성과금 지급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라고 날조하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해임당하는 모욕적이고 참담한 숙청과정을 겪었다. 토론자로서는 이번 판결 재판장의 과거 근무경력¹⁴⁾ 등을 문제삼는 이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반헌법적·반민주적 작태를 보면서 그들이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불행한 우리 헌정사를 다시 되돌려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하고 독재정부임을 자임하는 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경수 판결에 대해 대선불복이나, 판결불복이나는 각자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몫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체육관선거를 거부하고 대통령 직선을 관철시켰으며,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으로 국민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정권을 심

13)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동원이나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फल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공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판결문 제161면).

14) 이번 판결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근무한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는 비서 업무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성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선정한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는 법관이다.

판하였고, 측근의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등 어느 나라보다 높은 기준으로 독재정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를 넘어 비난을 일삼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¹⁵⁾ 이번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제기되는 대선무효 주장은 민주국가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이에 대한 집권여당 및 일부 언론의 대응은 마치 대선불복을 왕조시대의 역모와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보인다. 심지어 어느 공영방송 뉴스에서는 이번 김경수 판결 이슈를 포함하여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도피 의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최근 이 정권에 불리한 일련의 이슈 등을 덮으려는 듯이 “5·18공청회 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식의 유례 없는 편파보도도 일삼고 있다고 본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어디까지 관여하였는지 여하에 관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부정선거의 합리적 의심을 받는 집권여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법관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심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¹⁶⁾

15) 대한변협은 2018. 1. 31. 김경수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16) 한번의 2018. 1. 31.자와 2. 1.자 각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원용하였다.

토론 4

정치·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허만호 교수
(경북대)





김경수 여론조작판결 분석 대토론회 토론 요지: 정치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허만호 교수(경북대)

1. 토론의 전제조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원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 절차적 민주주의, 이성, 합리성

-여론조작과 전체주의적 독재(Totalitarian Dictatorship):

C. 프리드리히 (Friedrich)와 Z. 브레진스키(Brzezinski)

“대중민주주의와 현대적 Technology의 맥락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치통제의 형태”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동원

2. 사안의 성격

*광화문 연쇄집회에서 민주당의 집권까지

혁명: 광화문 연쇄집회 = “촛불혁명” ?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 ~ 2017년 4월 29일 23차 집회

가장 많은 참여: 12월 3일 6차 430,000명 (경찰 추산),

2,320,000명 (주최 측 추산)

평균 참가자: 732,711명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 ~ 25%])

對 대한민국 총인구: 51,778,544명 (2017년 말 기준)

누적인원: 16,852,360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 ~ 25%]

-노조에 장악된 언론 → 대중동원 → 보수당의 분열과 패닉

#Coup d'Etat(교조주의적 전투정당에 의한 대중적 급습)에서 혁명으로

쿠데타(Coup d'Etat):

친위쿠데타, 군사쿠데타, 궁정쿠데타(Palace Coup),

#교조주의적 전투정당(Dogmatic Militant Party)에 의한 대중적 급습
(Sudden Attack to Mass People)

뉴욕 대학교의 제프 구드윈 교수의 “혁명의 특징”:

"혁명은 기존의 국가나 정권에 반하는 불복종, 불법,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한 대중적인 사회운동을 통하여 국가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중동원이나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방면의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Jeff Goodwin, No Other Way Out: States and Revolutionary Movements, 1945-19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9.]

- 정치적 권력이나 권위의 폭력적 이행
- 헌법과 같은 법적인 질서형태의 변화
- 사회 system의 변화
- 사회구조, 특히 계급구조의 변화

⇒ **드루킹 김동원의 사상: “경공모”, “경인선”**

판결문 (2018고합823), 3쪽:

“ 김동원은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두형은 위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 민주주의 부정

2,000대의 관광버스(16억 원/1회)를 이용한 대중동원:

주체, 비용 출처의 문제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한 댓글조작팀의 활동: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크게 부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에 의한 이성 상실 (Panic → Anomie)

⇒ 정권 창출

↑ 정보 및 여론 조작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의 영향력: 여론형성에 80%

*2017년 1~12월 핵심 댓글요원 30명 고용, 월 200만원 지급

*2017년 4월 14일 드루킹 김동원이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

“킹크랩 100대, 충원작업 300건 돌파, 24시간 운영 ”

*2018년부터 댓글 요원 2배, 댓글 조작 건수 대폭 증가

3. 대안

*진실 규명 및 실체 추적 → 공표(언론, 시위, 발표·토론회)를 통한

국민의 이성 회복

*자료 추적 → 구체적 국면에서 활용

*우파 정당 및 정치인의 결집 (←자기희생적 리더십)

memo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and a large, faint, concentric circle watermark in the center.



memo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and a large, faint, concentric circle watermark in the center.

